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1조(2014.11.29.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 및 현재 공인의 글씨가 한글 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2011.3.22.개정)에 따라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인 훈민정음 글자체도 쓸 수 있게 개정함
- 공인관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업무 누수 방지를 위하여 공인 등록기관이 시, 구로 되어있는 것을 시로 일원화하고 공인의 공고시 구체적인 공고내용 명시 등 조항 정비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2016.3.29.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 등록번호 수집에 해당되는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내용 변경

2.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변경 : 경리관⇒재무관, 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 (안 제3조)
- 공인의 글씨를 훈민정음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공인 등록기관이 시, 구로 되어있는 것을 시로 일원화하여 공인관리 업무 누수 방지(안 제7조)
- 공인의 공고시 구체적인 공고내용 명시(안 제11조제1항)
- 공인대장에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3.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체를 개정하고 조항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2016. 7. 13.부터 8. 2.(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 조문별 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규정 중 “행정효율”을 법령 제명 띠어쓰기에 따라 “행정 효율”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절에서 “소속 행정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절에서 “하부 행정기관”을 구청장, 동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규정에 따라 “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을 “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또한 안 제2조제1항의 “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도 “안산시,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
- 안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정부조직의 보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는 것보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를 근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의 규정 중 “지출원, 출납원”을 「지방재정법」 제91조를 그대로 이기하여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는 바, 이는 제3조에서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다고 했으며, 달리 표현으로 법령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안 제4조제2항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舊,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3항에서 관인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공인이 아님. 그러므로 본 조문에서 규정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수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조항으로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른 공인이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제1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문서”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여겨짐.

- 안 제12조제1항의 규정 중 “그 사유를 들어”라는 문구는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舊,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과 같이 본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 제2항의 규정 중 “폐기내역(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폐기사유)을” “폐기내역(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폐기사유)에”로 수정해야 문맥상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기타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제명을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로 변경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7조)
-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 설치운영 사항 신설(안 제10조)

- 마을발전사업의 연계·융합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업무 총괄부서 등 지정(안 제8조)
-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 행정 협의체,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근거 마련(안 제9조)
- 마을만들기 예산지원 대상 사업, 지원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사업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환수대상 및 형성재산의 사용규정 신설(안 제11조~안 제16조)
-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활동가제도 운영근거(안 제12조)
-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관련 조문 변경(안 제17조~안 제26조)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 항목 보완 및 관리·운영 체계 마련(안 제27조~안 제31조)

3.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6. 9. 5.부터 9.26.(21일간)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 조문별 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조례명칭을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로 변경함은 한정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며 그 밖에 법체계상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9조제2항에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를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7조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으로써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행정협의체, 민·관협의체, 주민협의회,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하여 상호 유기적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가 요구됨.

마지막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마을만들기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개정이유를 들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마을 만들기 표준 조례안”이 2013. 6.28. 시달된 점을 감안하다면, 본 개정 조례안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이 늦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90블럭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대규모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공유재산의 매각수입이 수시로 예상됨에 따라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이자,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그 밖의 수입, 차입금
-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 공유재산 취득, 토지 분할합병 및 집단화 경비, 일상적 경비, 차입금 상환, 관리운영 경비, 도시정비기금 출연
-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지(독립채산의 원칙)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한다.
-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대장, 증명서류 보관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폐지시 일반회계로 귀속 토록 규정(안 제7조)

3. 검토 및 종합의견

1) 절차이행 등

- 가.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반영여부
 - 입법예고 : 2016. 7.25. ~ 8.16.(22일간)
 - 제출의견 및 반영여부 : 2건 중 1건 반영
- 나. 비용추계서 첨부 : 해당없음

2) 검토결과

- 먼저, 조례안 제정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 등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

재정법」 제9조에 근거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1차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잘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 결과,

먼저,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안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과 취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며, 정의규정이 없을 경우 공유재산의 의미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가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임. 정의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나타난 “공유재산”을 인용하면 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세입 중 하나를 “특별회계와 연관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회계와 연관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바, 이를 “특별회계 세출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됨.

셋째,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세출용도 중에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토지”的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 토지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것이므로, 이는 “공유재산”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넷째, 안 제6조에서 “준한다”라는 문구는 준용을 의미하고, 준용을 하려면 준용하려는 대상 조례를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따른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특별회계 폐지와 동시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있는데, 특별회계의 무엇이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가 않은 바, 일반회계로 귀속되어야 할 사항은 특별회계 회계인 자금과 부채라고 할 수 있음.(※세입에는 차입금도 있으므

로 특별회계의 부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안 제7조의 제명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등”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자금과 부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타 다른 조문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끝으로, 특별회계 설치시 일반회계의 세입 감소(약 16,964백만원)가 예상되므로 재정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 세출항목이 규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① 네스앙스 건물 매입

1. 제안이유

- 최근 90블럭이 매각되어 이를 대체할 만한 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미래 행정수요 및 시민복지 및 문화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 건물 준공 후 10년간 미운영 방치되어 지역경제 상권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네스앙스 쇼핑몰을 대체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안산시의 미래 행정수요 및 시민복지 및 문화수요 증가 등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물현황

- 위치 : 단원구 고잔동 703-4번지
- 면적 : 대지면적 $4,368.8\text{m}^2$, 연면적 $34,149.53\text{m}^2$
- 규모 : 지하4층, 지상9층
- 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 준공일 : 2005. 4. 30.
- 분양현황 : 분양 482구좌(386명), 미분양 419구좌

구분	소유자	구좌수	최초분양금액 (백만원)	비고
소계		901	107,299	
분양자	구분소유권자 386명	482	45,366	
미분양	네스앙스 (한국토지신탁)	419	50,433	제1수익권자 대우건설
극장	경기저축은행외 1		11,500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매입예정가격 : 43,000백만원 (전액 시비)

- 최초분양가 : 1,073억원 (부가세 포함)
- 개별공시지가 : 14,596,160,800원 ($3,341,000\text{원}/\text{m}^2$)
- 시가표준액 : 32,231,051,864원
- 사업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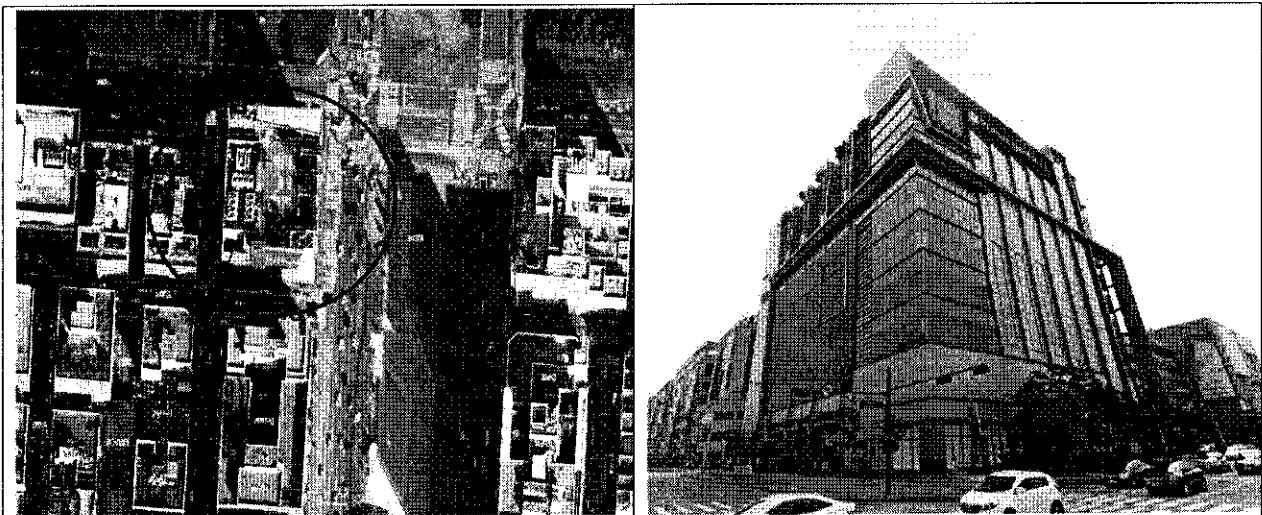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8년 이후	비고
계	43,000	0	43,000	0	0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0	0	
시군구비	43,000	0	43,000	0	0	

○ 총별 활용계획(안)

구 분	면적(m ²)	활용용도
계	34,149.53	
지하 1층~지하3층	9,131.71	주차장
지하 4층	3,273.58	주차장, 전기, 기계
지상 1층	2,687.17	상가 및 판매시설(임대)
지상 2층	2,790.36	상가 및 판매시설(임대)
지상 3층	2,819.5	사회적기업제품판매장, 예술인 창작센터(청년큐브 등)
지상 4층~지상5층	5,409.27	부서 요청 활용공간
지상 6층	2,820.08	구)상록구청사 소재 19개사회단체
지상 7층	1,802.61	미술관 및 전시관
지상 8층	2,962.5	
지상 9층	452.65	소규모 공연장

○ 위치도 및 현황



○ 추진사항 및 계획

- 네스앙스 쇼핑몰 매입계획 수립 : 2016. 08. 25.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6. 09. 27.
- 지방재정 자체투자심사 : 2016. 10. 19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6.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6. 10.
- 2017년 본예산 사업비 확보 : 2016. 11.

- 네스앙스 쇼핑몰 매입 추진 : 2017. 01. ~

② 한양빌딩 매입

1. 제안이유

- 최근 90불력이 매각되어 이를 대체할 만한 재산의 취득이 필요하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10,670개의 기업체와 20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일자리서비스의 시스템, 접근성, 정보 등이 여러 곳에서 나누어 제공함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안산시 종합일자리센터로 통합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 시청사 재정비 시 구)보건소 건물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가 철거되는 한편, 향후 세월호희생자 영결식 이후 세월호 관련 기록물의 이전에 따른 장소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한양빌딩을 대체 부동산으로 취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물현황

- 위 치 : 단원구 고잔동 531-5번지
- 면 적 : 대지면적 2,202.6㎡, 연면적 6,746.82㎡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주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준 공 일 : 1985. 5. 22.

○ 매입예정가격 : 8,000백만원 (전액 시비)

- 개별공시지가 : 7,054,927천원 (3,203,000원/㎡)
- 시 가 표 준 액 : 2,390,575천원
- 사업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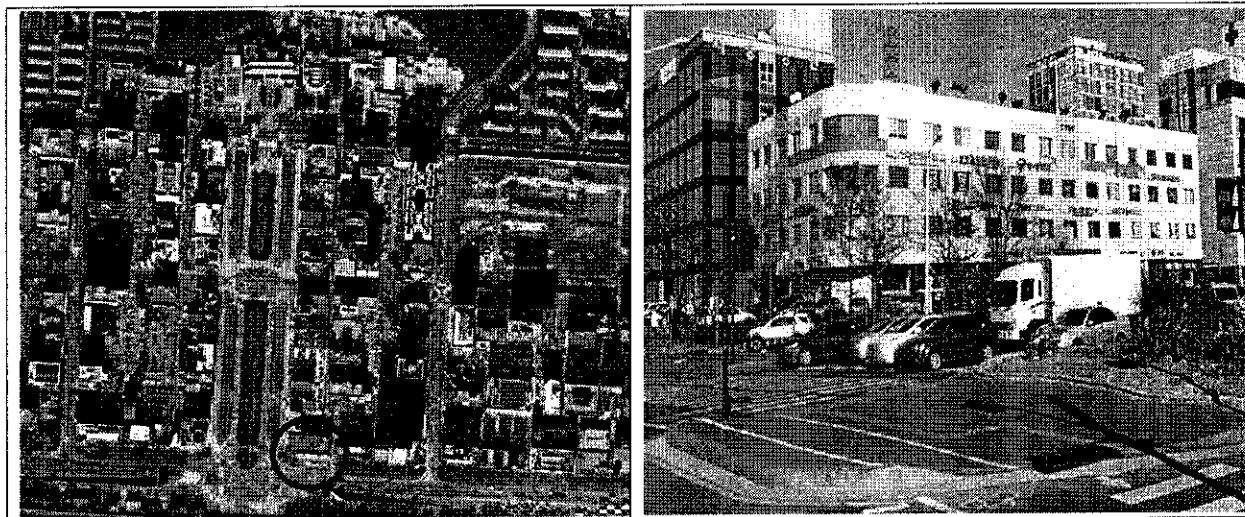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8년 이후	비고
계	8,000	0	8,000	0	0	
국 비	0	0	0	0	0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8,000	0	8,000	0	0	

○ 총별 활용계획(안)

구 분	향후 사용할 계획	면적(m ²)	비고
계		6,746.82	
지하 1층	•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	1,594.76	
지상 1층	• 안산시종합일자리센터(취업, 복지, 민원, 금융 등) • 사무실(일자리정책과), 상담실, 정신보건센터	1,290.22	
지상 2층	• 상설 채용취업광장	1,287.28	
	• 교육장, 세미나실 등		
	• 일자리관련 단체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안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 정신보건 센터 등	1,287.28	
지상 3층	• 소회의실, 세월호기록물 보관창고 등	1,287.28	
지상 4층		1,287.28	

○ 위치도 및 현황



○ 추진사항 및 계획

- 한양빌딩 매입계획 수립 : 2016. 09. 07.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6. 09. 27.
- 지방재정 자체투자심사 : 2016. 10. 19.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6. 1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6. 10.
- 2017년 본예산 사업비 확보 : 2016. 11.
- 한양빌딩 매입 추진 : 2017. 01. ~

③ 검토의견

□ 네스앙스 건물 매입안은

- 안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네스앙스 쇼핑몰은 중심상업지역임에도 건물 준공 후 10년이 지나도록 빈공실로 남아있어 지역경제 상권 침체와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바, 이를 취득하여 침체되어 있는 고잔신도시 상권을 활성화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청사 재정비 추진 시 현재의 단원구청 가건물, 와스타디움 내 유휴 공간 등으로 분산 배치하여야 하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분산배치는 비효율적인 구조인 바, 한 곳에서 업무할 수 있는 임시 청사로 본 네스앙스 건물을 매입할 경우 서비스 제공과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90블록이 매각되어 이를 대체할 만한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본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여러 이해관계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 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임시청사 활용 이후 장기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납득할 만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양빌딩 매입안은

- 안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양빌딩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30년이 경과 된 노후화 된 건물로써 공실상가로 인해 지역상권 침체와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신안산선 개통과 중앙역사 리모델링 전에 시에서 매입하여 업무 시설로 활용할 경우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건물 활용계획안에 의하면, 취득 후 리모델링 이후에도 일자리정책과와 종합일자리센터 상담실, 소회의실, 상설채용취업광장, 교육장, 세미나실, 일자리관련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며, 정신보건센터 및 세월호기록물 보관장소로의 활용도 가능함에 따라 시에서 취득할 경우 향후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매입 시기는 적절하다고 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한양빌딩은 토지가격만 70억원(공시지가)에 이르며, 건물시가 표준액이 24억원으로 토지, 건물의 합계가 94억원에 달하나, 80억원 이내로 매입한다면 투자대비 경제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90블록이 매각되어 이를 대체할 만한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본 건물을 꼭 취득하여야 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좋은마을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시설명 :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고잔법조빌딩 509호)
- 시설규모 : 152.06m²
- 위탁사무 :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나. 운영현황

- 설치시기 : 2007. 9. 1.
- 위탁단체 : 안산기독교청년회
- 위탁기간 : 2008. 1. 1. ~ 2016. 12. 31.(9년) ※ 최초 3년 위탁 후 2회 재계약
- 주요사업 :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공모사업 및 교육사업 등
- 운영인력 : 6명(사무국장 1, 직원 5) ※ 센터장 : 비상근
- 예산 : 621,300천원(2016년)
※ 2017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 900,000천원

다. 필요성

- 마을만들기 인재 육성, 지역 공동체 형성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 필요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안산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12.31.로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2008~2016년까지 위탁단체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각종 공모사업 추진 (212건, 748,307천원), 사1동 및 사2동의 원탁회의를 통한 마을계획, 사회 복지관 협력 프로젝트 등 기획사업 추진, 사이좋은사2동마을만들기 사업 등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 바, 사업추진 성과는 큰 것으로 여겨짐.
- 이에 마을만들기 인재 육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 되어야 할 것임.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2017년 2월 28일자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대상시설

- 어린이집 :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 소재지 : 안산시청 별관(단원구 화랑로 387번지)
- 보육규모 : 18개반 150명
- 교직원 : 29명
- 시설규모 : 지상 3층 / 1,169.95m²
- 위탁기간 : 2017. 2. 28. ~ 2022. 2. 28.(5년)¹⁾

나. 보육아동현황 : 18개반 150명

연령	합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반수(개)	18	2	6	4	2	2	2
현원(명)	150	6	28	28	30	31	27

☞ 시간연장 2개반(10명) 운영(18시~20시)

다. 예산규모 : 1,367,728천원

☞ 보육료 수입금 등 669,728천원 / 위탁보조금 698,000천원(인건비)

라. 심사결정방법

- 적격성 확인 : 위탁운영신청자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 선정방법 : 별도의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2)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 심사 결정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 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등점자 처리 : 심사항목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운영체
 · 1순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2순위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순위 :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결과 공개 : 안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마. 민간위탁의 필요성

○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함.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이 2017. 2.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으므로, 본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가 선정 되어야 할 것임.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2017년 2월 28일자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대상시설

- 어린이집 :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 소재지 : 상록구청 내(상록구 석호로 110, 사동)
- 보육규모 : 10개반 77명
- 교직원 : 16명
- 시설규모 : 지상 2층 / 914.5m²

- 위탁기간 : 2017. 2. 28. ~ 2022. 2. 28.(5년)²⁾

나. 보육아동현황 : 10개반 77명

연령별	합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학급수(개)	10개반	2개반	3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현원(명)	77명	6명	15명	15명	14명	15명	12명

☞ 시간연장 1개반(5명) 운영(19:30~22:00)

다. 예산규모 : 764,533천원

☞ 보육료 수입금 등 344,533천원 / 위탁보조금 420,000천원(인건비)

라. 심사결정방법

- 적격성 확인 : 위탁운영신청자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 선정방법 : 별도의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후 심사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 심사결정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 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동점자 처리 : 심사항목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운영체
· 1순위 :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2)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 2순위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순위 :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결과 공개 : 상록구청 홈페이지 게시

마. 민간위탁의 필요성

-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함.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이 2017. 2.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으므로, 본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가 선정 되어야 할 것임.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청사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탁 명 :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 개원예정일 : 2017. 9. 1. (준공일 : '17. 7. 11.)
- 시 설 규 모 : 지상 1~2층 (연면적 1,001.77m²)
 - 주요시설 : 보육실7, 유희실1, 다목적실1, 교무실2, 조리실1 등
- 위 탁 방 법 : 신규 위탁 <공개모집>
- 위 탁 기 간 : 2017. 9. 1. ~ 2022. 8. 31.(5년)
 -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위탁기간 5년
- 종 사 자 : 20명
 - (시설장, 보육교사13, 시간연장교사1, 비담임1, 사무원1, 취사부3)

○ 보육정원 : 13개 반 91명

연령별	합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학급수	13개반	4개반	4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1개반
교사대 아동	-	1:3	1:5	1:7	1:15	1:15	1:15
정원(명)	91명	12명	20명	14명	15명	15명	15명

○ 세입재원 (사용자부담금+보조금)

- 사용자부담금 : 보육료,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등

- 위탁보조금 : 134,000천원(인건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50%

《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

('16.10월 현재 기준)

구 분	개월일	보육규모	종사자	시설규모	민간위탁금
안산시청	1997.4	18개반 150명	29명	지상3층/연면적 1,169.95m ²	698,000천원
상록구청	2011.3	10개반 77명	16명	지상2층/연면적 914.5m ²	400,000천원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맞는 맞춤형의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단원구청 신청사가 2017. 7. 준공예정에 있고, 이에 따라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2017. 9. 1. 개원목표를 하고 있는 바,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에 의거 위탁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 단원구청 인력(346명)만으로는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안산시 상시 근로자 총 2,890명, 여직원수는 1,295명으로 인사발령에 의해 시청, 양 구청으로 수시 이동하고, 시청·상록구청 총 보육정원이 227명으로 보육규모가 부족하며, 1개의 어린이집으로 통합 운영시 공간문제, 접근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시장을 사업주로 하고 구청을 단위사업장로 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려는 사항임.

-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될 것이므로, 본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를 신규로 선정하는 만큼,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가 선정 되어야 할 것임.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으로 경찰교육시설(경찰대학, 경찰교육원, 경찰수사연구원)이 2016년 1월 충남 아산시로 이전 완료됨.
- 이에 지역연고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안산연고프로축구단의 운영이 2016.12.31.자로 종료하고,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조례 제정 및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률명 및 조항을 변경하여 프로축구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을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서 「안산시 시민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로 변경(제명)
- 프로축구단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추가(안 제1조)
-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3. 검토의견

1) 절차이행 등

- 가.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반영여부
 - 입법예고 : 2016. 8. 5. ~ 8.26.(21일간)
 - 제출의견 및 반영여부 : 3건 중 1건 반영
- 나. 비용추계서 첨부 : 불임

2) 검토결과

- 우리 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형성된 전국 최초의 계획 도시로서 시승격 30여년만에 산업단지는 물론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제반 여건이 골고루 갖춰진 대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왔음.
그러나 우리 시는 외지인의 인구 유입으로 대도시로 성장한 반면에 시민

들의 정주의식 빈약에 따른 애향심 부족으로 시민화합의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애향심을 갖고 시민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이전의 축구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을 위해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반면에 금번에 창단되는 시민프로축구단은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팀으로서 유소년 축구단 육성 및 축구클럽의 활성화로 이어져 스포츠메카로서의 안산시 이미지 구축은 물론 안산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100여개 축구클럽 3,000여명 동호인 활동

※ 「2015 K-리그 올스타전」, 「2016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30,000여명 관람
(와~스타디움)

※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서명운동 30,000여명 참여

- 다만, 연간 40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비 가운데 시 보조금을 제외한 20억원의 후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비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작은 구단으로 시작해 K리그 클래식 승격 및 자생구단 실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본 축구단을 운영해야 할 것임.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시·도간 논의를 거쳐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통보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494호 (2015.8.28.))
-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토대로 중복된 조문의 삭제, 축소, 용어의 정비 등으로 담당공무원 및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 확립

2. 주요내용

-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의 삭제·축소 및 명확화(조문 51개조→9개조)
 - 납부기한의 연장,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 시세의 수납 및 환급금 처리에 관한 사항
 - 납세담보의 요구·보관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압류, 수색, 공매처분, 배분방법 등 체납처분과 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 진행 중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서류송달의 방법 중 송달부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이관
- 성실납부자를 판단하는 세목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
 -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가 폐지된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자연 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에 따라 자치 법규 기본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도 담당자 회의 및 논의를 거쳐 축조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의 기본안이 우리 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토대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 축소하거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담당공무원 및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를 확립 하려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사안은, 납부기한의 연장,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 시세의 수납 및 환급금 처리에 관한 사항, 납세담보의 요구·보관에 관한 사항, 재산의 압류, 수색, 공매처분, 배분방법 등 체납처분과 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거나 축소(조문 51개조⇒9개조로 축소)함으로써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음.

또한, 성실납부자를 판단하는 지방세의 세목을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성실납부자를 판단하는 세목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담당공무원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필요성 제기에 따라 시·도간 논의를 거쳐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통보(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494호(2015.8.28.))

-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토대로 중복된 조문의 삭제, 축소, 용어의 정비 등으로 담당공무원 및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 확립

2. 주요내용

-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의 삭제·축소 및 내용의 단순 명확화
(조문 26개조→16개조)
 - 담배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장부 비치·보존 의무에 관한 사항
 - 재산세 세율,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신고의무규정에 관한 사항
 - 미신고자 및 비과세대상자의 신고 및 폐지신고, 납세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에 관한 사항
- 조문 내용의 단순 명확화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한다로 명시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가 폐지된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자연 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 발생에 따라 자치 법규 기본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도 담당자 회의 및 논의를 거쳐 축조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의 기본안이 우리 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토대로 중복된 조문을 삭제, 축소하거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담당공무원 및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를 확립 하려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사안은, 담배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장부 비치·보존 의무에

관한 사항, 재산세 세율,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신고의무규정에 관한 사항, 미신고자 및 비과세대상자의 신고 및 폐지신고, 납세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거나 축소(조문 51개조⇒9개조로 축소)함으로써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음.

또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자동차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조례에 명시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기재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 내용을 단순 명확하게 하는 등 담당공무원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 만료 예정임
-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인·구직 상담, 알선, 취업 지원 등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시설명 : 안산시 일자리센터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17. 1. 1. ~ 2026. 12. 31.(10년)
※ 재위탁기간 : 2017. 1. 1. ~ 2018. 12. 31. (2년)
-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민원동 2층

나. 운영현황

- 설치시기 : 2010. 3. 1.
- 위탁업체 : 스텝스(주)
- 위탁기간 : 2016. 1. 1. ~ 2016. 12. 31.(1년)
- 주요사업 : 안산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및 운영
- 운영인력 : 32명(일자리센터 6명, 동 25명, 365휴일근무자 1명)
- 예산 : 805,000천원(2016년)
※ 2017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 1,100,000천원

다. 필요성

- 전국적으로 취업전문 컨설팅업체를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 추진함으로써 전문업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알선·상담·발굴 및 다양한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매칭의 우월한 노하우를 채택 실행할 수 있으며,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고용률 증대 효과 기대
-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알선함으로써 구직자 개인의 성향분석 및 구인업체에 알맞은 적재적소의 구직인력 매칭 등으로 이직율 감소 효과 기대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인·구직 상담, 알선, 취업지원 등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안산시 일자리

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12.31.로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취업전문업체에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알선·상담·발굴 및 다양한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매칭의 우월한 노하우를 채택 실행할 수 있으며,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고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알선함으로써 구직자 개인의 성향분석 및 구인업체에 알맞은 적재적소의 구인인력 매칭 등으로 이직율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 되어야 할 것임.

2017년도 출자금 운영 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출자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도시공사의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1개 부서 1개 사업 (출자금 50,000백만원)에 대하여 출자 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상정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 사업명 : 안산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

○ 지원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필요성 : 現 자본금(200억원)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 직면

경기도(12개) 공사 중 안산도시공사 자본금 최하위 수준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 추진

나. 출자금 현황

○ 소요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출자금	산출기초	지원기관(단체)	비고
50,000	안산도시공사 개발사업(5건) 추진 사업비	안산도시공사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50,000	0	50,000	
인건비	-	0	0	0	
출자금 (총사업비)	▪ 한마음 행복주택사업 10,912백만원 (48,264백만원) ▪ 팔곡산업단지 지원시설 건립 21,578백만원 (25,778백만원) ▪ 신길산업단지 조성사업 2,410백만원 (4,575백만원) ▪ 재생에너지사업 등(태양광, U플래카드 광고) 3,100백만원 (3,100백만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12,000백만원 (12,000백만원)	50,000	0	50,000	
기 타	-	0	0	0	

3. 검토의견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안산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 출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서는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로 되어 있고,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공사의 자본금은 안산시가 그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대행사업에 머물렀던 사업영역을 개발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현금출자를 요청한 사안으로 도시공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출자금 운영계획안에 제시된 한마음 행복주택 사업 등 5개 개발 사업은 현재 계획단계로 사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하나, 도시 공사에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향후,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리스크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사안이며,
- 5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사업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으나, 사업결과 공사 자본금을 잠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시 출자금 규모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함.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 10. 11. 제출되어 10. 17.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3개 부서 4개 사업(출연금 6,350,008천 원)에 대하여 출연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적 요	부서명	출 연 금				비고
		제	인건비	사업비	기타	
총 계	4개 사업	6,350,008	1,311,362	2,465,200	2,573,446	
1. 세정 전문화	세 정 과	60,205	0	0	60,205	
2.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지역경제과	1,000,000	0	1,000,000	0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교육청소년과	1,839,803	1,249,362	125,000	465,441	
4.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교육청소년과	3,450,000	62,000	1,340,200	2,047,800	

○ 세부내용

① 세정 전문화

- 가. 지원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제4항
- 나. 필요성 : 지방세에 대한 연구·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과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

다. 지원단체 : 한국지방세연구원

라. 출연금 : 60,205천원 [(전전년도보통세 결산액) 401,365,337천원 × 0.015%]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60,205	54,263	5,942	
인건비					
사업비					
기 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발전기금	60,205	54,263	5,942	

②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가. 지원근거 :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나. 필요성 :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다. 지원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라. 출연금 : 1,000,000천원 (2,000,000원 × 500개소)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요 내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1,000,000	1,000,000	0	
인건비	-	0	0	0	
사업비	▪ 대상 : 안산시 관내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 사업기간 : 출연일로부터 자금소진시 까지 ▪ 출연금액 : 10억원 ▪ 지원규모 : 100억원 (출연금액의 10배) ▪ 한도액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보증서 발급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1,000,000	1,000,000	0	
기 타	-	0	0	0	

③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가.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경비)

나. 필요성 :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다. 지원기관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라. 출연금 : 1,839,803천원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1,839,803	1,543,000	296,803	
인건비	직원 급여 및 제수당	1,249,362	1,057,180	192,182	
사업비	안산시생활과학교실 및 프로그램운영	125,000	25,000	100,000	
경비	운영경비 및 시설유지 보수비	465,441	460,820	4,621	

④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가. 지원근거 :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필요성 :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안산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다. 지원기관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라. 출연금 : 3,450,000천원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3,450,000	1,150,000	2,300,000	
인건비	보수 및 퇴직금(직원 2명)	62,000	24,823	37,177	
사업비	소 계	1,340,200	1,085,606	254,594	
	장학사업	1,275,200	994,200	281,000	
	청소년사업	65,000	61,406	3,594	
	연구용역	0	30,000	△30,000	
그 외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경비	47,800	39,571	8,229	
기본재산적립	10년간 기본재산 200억 조성을 위한 매년 20억 적립	2,000,000	0	2,000,000	

3. 검토의견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함.
- 첫째, 세정 전문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³⁾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6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담보 제공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1.4.20. 개원하여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 셋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서 법인설립 재원은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에는 운영경비에 대한 출연근거는 없으나, 금번 회기에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제2항에 운영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출연에 따른 법적근거는 조례안 심의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넷째,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 원 조성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